

필요가 있음.

(2) 허위증거 제출, 위증,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와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3) 국제형사재판소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의 수사·재판의 공정성 및 적정성 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법 제19조 내지 제22조)

(1) 국제형사재판소와의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를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범죄인인도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률을 준용하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함.

(3)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형사협력이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7년12월21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 성 진

◎법률 제8720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萬환以下”를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161조의 제목 중 “公休日”을 “공휴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公休日”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801조 전단 중 “男子 滿18歲, 女子 滿16歲에 達한 者는”을 “만 18세가 된 사람은”으로 한다.

제8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83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장제5절제1관에 제8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909조제4항 중 “離婚한”을 “이혼하는”으로,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를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제83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만 16세가 된 여자는 제801조 및 제80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약혼 또는 혼인할 수 있다.

**◇민법 개정이유**

헌법상의 양성평등원칙 구현을 위하여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키는 한편,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계산 규정의 정비(법 제161조)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하도록 함.

나.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규정 정비(법 제801조 및 제807조)

- (1) 현행 민법은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 (2)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함.
- (3)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이혼숙려기간 도입(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2)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함.
- (3) 신중하지 아니한 이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법 제

836조의2제4항 신설)

-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 (2)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3)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법 제837조의2제1항)

- (1) 현행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음.
- (2)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 (3)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아동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법 제839조의3 신설)

- (1)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재산분할청

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음.

(2)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함.

(3) 재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시기·공개범위와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12월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성진

◎**법률 제8721호**

**赦免法 일부개정법률**

赦免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赦免法”을 “사면법”으로 한다.